##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1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문진석・이재관・한정애

장종태 • 이정문 • 김동아

이연희 • 김종민 • 박용갑

김문수 · 윤호중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 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며 시세 등이 변동하므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이상 개최해 시장상황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 조의2). 법률 제 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		
	최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